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기간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하고,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기간을 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안 제9조제2항)
- 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09.04(수)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행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8~9, fax 044-201-5587)